

의안번호	제호	의결사항
의결 연월일	2024. . . (제회)	

국민권익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 개정령안

제출자	국무위원 이상민 (행정안전부장관)
제출 연월일	2024. . .

법제처 심사 전

1. 의결주문

국민권익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민권익위원회에 공공기관의 채용비리 근절을 위한 관련 제도의 운영, 신고의 처리 및 실태조사 등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증원한 한시 정원 3명(4급 또는 5급 1명, 6급 1명, 7급 1명) 중 2명(4급 또는 5급 1명, 6급 1명)은 상시정원으로 전환하고, 1명(7급 1명)은 감축하는 한편,

범정부 차원에서 인력을 통합하여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통합활동정원제 운영 계획에 따라 국정과제·정책현안 등의 추진을 위한 인력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국민권익위원회의 정원 4명(5급 2명, 6급 1명, 7급 1명) 및 국민권익위원회 소속기관인 청렴연수원의 정원 1명(9급 1명)을 각각 감축하려는 것임.

3. 주요토의과제

없 음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2024년도 기정예산에서 대체함

다. 합 의 : 국민권익위원회 등과 합의되었음

라. 기 타 : 1) 신·구조문대비표 및 신·구정원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2024. 11. 13. ~ 11. 18.)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국민권익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

국민권익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5항 중 “2명(5급 2명)은 감사원”을 “1명(5급 1명)은 감사원”으로, “2명(6급 2명)은 산업통상자원부”를 “1명(6급 1명)은 산업통상자원부”로, “해양수산부, 1명(5급 1명)은 법제처”를 “해양수산부”로 한다.

제18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8조(한시정원) 온라인 국민참여포털 등을 통하여 제출된 국민제안 등의 관리 체계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5조제1항에 따라 2025년 12월 31일까지 별표 4에 따른 한시정원을 국민권익위원회에 둔다.

별표 1 중 총계 “483”을 “481”로 하고, 일반직 계 “475”를 “473”으로 하며, 3급 또는 4급 이하 “451”을 “449”로 한다.

별표 1의2를 별지와 같이 한다.

별표 2 중 총계 “78”을 “77”로 하고, 일반직 계 “78”을 “77”로 하며, 3급 또는 4급 이하 “75”를 “74”로 한다.

별표 4를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8조 및 별표 4의 개정규정은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정원에 관한 특례) 국민권익위원회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에 관하여는 별표 1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2024년 12월 31일까지는 별표 1의2의 개정규정을 적용한다.

제3조(정원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으로 감축되는 국민권익위원회의 정원 4명(5급 2명, 6급 1명, 7급 1명)과 국민권익위원회 소속기관의 정원 1명(9급 1명)에 해당하는 초과현원이 있는 경우에는 그 초과된 현원이 이 영에 따른 정원과 일치될 때까지 그에 상응하는 정원이 국민권익위원회와 그 소속기관에 각각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별표 1의2]

국민권익위원회 공무원 정원표(제15조제1항 관련)

(대통령령 제00000호 국민권익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 부칙 제2조
관련)

총계	479
정무직 계	4
위원장(장관급)	1
부위원장(차관급)	3
별정직 계	1
5급 상당 이하	1
일반직 계	471
고위공무원단	9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임기제	6
3급 또는 4급 이하	447
전문경력관	9
경찰공무원 계	3
경정 이하	3

[별표 4]

국민권익위원회 공무원 한시정원표(제18조 관련)

제18조 관련 한시정원(존속기한: 2025년 12월 31일)

총계	2
일반직 계	2
5급 이하	2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5조(위원회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①·② (생략) ③·④ 삭제 ⑤ 제1항 및 별표 1에 따른 위원회의 정원 중 <u>2명(5급 2명)</u> 은 <u>감사원</u> , 1명(5급 1명)은 교육부, 1명(6급 1명)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1명(6급 1명)은 법무부, 2명(5급 1명, 6급 1명)은 행정안전부, 2명(5급 1명, 6급 1명)은 국가보훈부, 2명(5급 1명, 6급 1명)은 문화체육관광부, 2명(5급 1명, 6급 1명)은 농림축산식품부, <u>2명(6급 2명)</u> 은 <u>산업통상자원부</u> , 2명(5급 1명, 6급 1명)은 보건복지부, 1명(5급 1명)은 환경부, 2명(5급 1명, 6급 1명)은 고용노동부, 7명(5급 4명, 6급 3명)은 국토교통부, 1명(6급 1명)은 <u>해양수산부</u> , 1명(5급 1명)은 <u>법제처</u> , 2명(6급 2명)은 국세청, 3명(경정 1명, 경감 2명)은 경찰청 소속 공무원으로 각각 충원할 수 있다.	제15조(위원회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①·② (현행과 같음) ⑤ ----- ----- <u>1명(5급 1명)</u> 은 <u>감사원</u> ----- ----- ----- ----- ----- ----- ----- <u>1명(6급 1명)</u> 은 <u>산업통상자원부</u> ----- ----- ----- ----- ----- ----- ----- <u>해양수산부</u> ----- ----- ----- ----- ----- -----.

제18조(한시정원) ① 공공기관의 채용비리 근절을 위한 관련 제도의 운영, 신고의 처리 및 실태조사 등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5조제1항에 따라 2024년 12월 31일까지 별표 4에 따른 한시정원을 국민권익위원회에 둔다. ② 온라인 국민참여포털 등을 통하여 제출된 국민제안 등의 관리 체계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5조제1항에 따라 2025년 12월 31일까지 별표 4에 따른 한시정원을 국민권익위원회에 둔다.	제18조(한시정원) 온라인 국민참여포털 등을 통하여 제출된 국민제안 등의 관리 체계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5조제1항에 따라 2025년 12월 31일까지 별표 4에 따른 한시정원을 국민권익위원회에 둔다.
---	---

신 · 구정원대비표

[별표 1]

국민권익위원회 공무원 정원표(제15조제1항 관련)

직 급 별	현 행	개정안	증 감
총 계	<u>483</u>	<u>481</u>	-2
·	·	·	
·	·	·	
일반직 계	<u>475</u>	<u>473</u>	-2
·	·	·	
·	·	·	
3급 또는 4급 이하	<u>451</u>	<u>449</u>	-2
·	·	·	
·	·	·	

[별표 2]

국민권익위원회 소속기관 공무원 정원표(제15조의2제1항 관련)

직 급 별	현 행	개정안	증 감
총계	<u>78</u>	<u>77</u>	-1
일반직 계	<u>78</u>	<u>77</u>	-1
·	·	·	
3급 또는 4급 이하	<u>75</u>	<u>74</u>	-1
·	·	·	

< 의안 소관 부서명 >

행정안전부 사회조직과	
연 락 처	(044) 205 - 2368